

멕시코 혁명정부와 불간섭원칙

송 기 도
(전북대, 정치학)

1. 머리 글

대외정책은 한 나라가 국가목표설정에 따라 추구하고 있는 여러 공공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 정책이 개별적 또는 특수한 이익추구를 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외정책은 그 국가의 기본적 가치, 즉 국가의 생존과 안전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국의 뜻에 의해 추진시켜 나가기보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조정하고 해결하여 가는 것이다. 이같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도구는 물론 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되어지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는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나 역사적 경험 또는 국내외적인 현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형성된 특별한 원칙들에 의해 제약받는 것이다.

이같은 면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강국이고 부국인 미국과 3,000km에 달하는 긴 국경을 접한 인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독립이후 국가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통스럽고 쓰라린 역사적 경험은 멕시코 대외정책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요인들보다도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즉 멕시코의 대외정책은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에서 유인되고 형성된 「특별한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원칙들은 1910년 혁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모든 정부들에 의해 커다란 변화 없이 잘 지켜져 왔다. 특히 1910년 시작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국, 특히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간섭은 1917년 혁명이 끝나고 수립된 Carranza 대통령의 혁명정부가 「불간섭원칙」을 멕시코 대외정책의 초석으로 천명하고, 이를 멕시코는 물론 이웃 중남미국가들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

간섭원칙」이 「미주기구」(OEA, La Organización de los Estados Americanos)의 기본 규약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 혁명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멕시코는 국제 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물론 이같은 수동적인 대외정책에 부분적으로 예외적인 시기가 —Lázaro Cárdenas, López Mateos와 López Portillo 대통령 재임시—있긴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멕시코는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인 고립까지도 포함한 소극적 태도를 취하여 왔다. 즉 멕시코가 국가의 특정한 목표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하여 나가기보다는 열강, 특히 미국의 정책에 대항하여 멕시코의 주권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방어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는 가능한한 외국과의 관계를 적게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불간섭원칙」과 「주민자결원칙」을 초석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멕시코 대외정책의 원칙들, 특히 「불간섭원칙」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연구하고, 또한 이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해 멕시코는 어떤 태도를 취했나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특히 Carranza 혁명정부에 의해 대외정책의 초석으로 천명된 「불간섭원칙」이 이후 계속된 혁명정부들에 의해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지켜져 나갔나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2. 역사적 배경

19세기초 멕시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면서부터 독립국가로서 존속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만 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식민지를 회복하려는 스페인과 이를 지원하는 「신성동맹」의 재침략에 대항하여 신생 독립국인 멕시코의 가장 중대한 국가목표는 무엇보다도 독립된 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국인 미국의 영토적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고 이는 1848년 Guadalupe-Hidalgo 조약에 의하여 독립 당시 국토의 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1862년에는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의 침략에 의해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강탈당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멕시코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로 반세기 이상 독립국가로서의 존속과 국토의 보존을 국가주권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게 하였다.¹⁾

1) Mario Ojeda Gómez, *Alcances y límites de la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76), p.3.

19세기 후반에 영토적 팽창을 멈춘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제국에 경제적인 침투를 자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멕시코는 경제적인 문제를 빌미로 이들 열강들이 멕시코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주권은 「주민자결」과 「내정 불간섭」의 동의어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이같은 투쟁은 20세기초 멕시코 혁명 시 그 절정에 달했다. ‘멕시코인들에게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을 가르켜주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윌슨 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수시로 넘어와 침입하였으며, 1914년 베라크루스항의 무력 점령, 멕시코 주재 미국 윌슨대사의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반혁명군의 지원, 그리고 혁명정부의 불인정 등을 통하여 멕시코 혁명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1917년 혁명 후 세워진 혁명정부의 Carranza 대통령은 그 어느 멕시코 대통령보다도 미국의 간섭주의 정책에 의해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며 이는 당연히 신정부수립과 함께 「국가간의 평등」, 「국제법의 준수」와 타국의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골자로 하는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 쟁취한 「주민자결원칙」과 함께 멕시코 대외정책의 초석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자율성의 확보와 독립성의 강화는 멕시코 혁명 이후 지속적인 국가목표가 되어 왔으며,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멕시코의 태도를 결정지워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멕시코의 태도는 자연자원의 국가소유를 선언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력히 표명한 1917년 헌법에 잘 나타나 있다.²⁾

3. 대외정책 원칙들과 지속성

멕시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외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졌던 법률적 권한과 정치적으로 형성되어온 수많은 정치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³⁾ 혁명 이후 멕

2) 멕시코에서 민족주의는 근본적으로 1910년 혁명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후 멕시코 혁명은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과거 미국과의 전쟁과 Porfirio Díaz 독재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적인 침략, 특히 혁명기간 동안 미국의 수많은 개입에 의해 손상 당한 멕시코인들의 자존심을 고양시켜 주었다. 이같은 민족주의적 성향, 특히 반미감정과 얽힌 멕시코 민족주의는 이후 1938년 Cárdenas 대통령에 의한 석유 국유화 조치와 1958년 López Mateos 대통령의 전기 국유화조치, 그리고 1982년의 López Portillo 대통령의 은행국유화 발표시에 잘 표출되었다.

3) 멕시코 헌법 제8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각부 장관의 임면과 군과 경찰 고위장성의 임

코는 「6년기간의 절대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 유일의 공화국으로 간주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고 이같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은 오직 멕시코 혁명의 모토였던 「재선불가원칙」(El principio de la no-reelección)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 설 때마다 과거 정부가 취해왔던 외교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예를 제외하곤 멕시코의 대외정책은 혁명 이후 계속된 정부들에 의해서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같은 대외정책의 지속성과 지속성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수시로 변화를 겪은 국내 여타정책들과 비교할 때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같은 지속적인 대외정책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외정책을 제약하고 규정지워주는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 중에서 보다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국가간의 평등」, 「주민자결」, 「타국의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조약의 준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외국의 직접 또는 간접의 수많은 간섭을 당한 약소국가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같은 대외정책의 원칙들이 철저히 지켜졌을 때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은 것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 「국제법」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지켜야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인류 공존의 영원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명분으로 또는 다양한 구실하에 국제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 국가 이익을 지키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법」의 준수를 외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제정치에 있어서 법은 약소국가들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란 강자에게 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이며, 반대로 약자에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인 것이다. 따라서 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약소국들은 그들의 주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면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제71조에는 법률제안과 집행의 권한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또한 법관의 임명과 정부공사의 고위직에 대한 임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적인 권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계자를 지명하는 권한과 실질적으로 각 주지사,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지명과 혁명 이후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지배해온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정치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송기도, *La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 ante la Revolución cubana y la nicaraguense*, 박사학위논문,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1986, pp.52-62. 보다 상세한 내용은 Daniel Cosío Villegas, *El sistema político mexicano* (México, D.F.: Ed. Joaquín Mortiz, 1972); Jorge Carpizo, *El presidencialismo mexicano* (México, D.F.; Siglo XXI, 1978); Jaime E. Tamayo, *Los principios de la política internacional de México* (Guadalajara: Univ. de Guadalajara, 1978)을 참조할 것.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는 국제사회에서 영토적, 경제적 또는 이념적 확장을 위한 욕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야망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무력적 힘도 갖고 있지 않다. 이같은 현실의 명확한 인식은 멕시코가 과거 수많은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겪은 역사적 경험과 함께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준수를 강조하여 오게 하였다.

“개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에서도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평화이다.”라는 Benito Juárez의 사상은 타국의 권리를, 즉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 평화를 달성하는 길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는 대외정책의 초석으로 간주하는 「불간섭원칙」과 「주민자결원칙」을 비롯한 「국가간의 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조약의 준수」 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서, 특히 서반구에서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현재에는 국제연합이나 미주기구에서 이들 원칙들이 국제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을 때 멕시코는 자국의 외교정책이 유엔의 국제정치의 목적과 동일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다. 1946년 Castillo Nájera 박사는 멕시코가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들 간의 공존이 법의 지배하에서 조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라고 하였다.⁴⁾ 또 1977년 5월 20일 Lázaro Cárdenas 전대통령에 대한 기념식에서 Santiago Roel 멕시코 외무장관은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멕시코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기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였다.⁵⁾ 다시 말해, 멕시코가 국제 연합에 가입하였을 때 멕시코는 매우 분명한 태도를 취하였다. 즉 국제법이 회원국들 사이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제2625호(XXV) 결의인 국가사이의 협조와 친선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 선언은 멕시코 대외정책의 원칙들과 같은 내용이다.⁶⁾

원칙에 의한 대외정책의 수행은 혁명 이후 설립된 모든 멕시코 정부에 의해서 수없이 되풀이 하여 천명되었다. 1971년 의회 연설에서 Luis Echeverría 대통령은 멕시코 대외정책의 원칙들이 변함없이 지속됨을 강조하였다.

4) Sergio González Gálvez, “México y las Naciones Unidas: El imperio del derecho como objetivo común,” en Rosario Green, *Continuidad y cambio en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 1977*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77), p. 96.

5) *Ibid.*, p. 67.

6) 국제법의 원칙 선언의 내용은 1) 무력 사용의 포기,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3) 타국의 내정에 간섭 금지, 4) 국가간의 협력 의무, 5) 주민 자결, 6) 국가간의 평등, 7) 국제 조약의 준수 등이다.

“...국제 사회에서 멕시코의 대외정책을 특징지워 왔던 원칙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갈 것이다. 이것들은 국가간의 평등, 주민의 자결과 타국 내정에의 불간섭, 분쟁의 평화
 적 해결 그리고 국가간의 협력이다.”⁷⁾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원칙들이 멕시코 대외정책의 중요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멕시코 대외정책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원
 칙의 준수를 멕시코의 운명과 결부지어 설명한’ 1982년 5월 11일 López Portillo 대
 통령의 언론인과의 기자회견일 것이다.

“...하나의 체계는 원칙들이 모인 것이다. 만일 이것들이 없다면 생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멕시코는 국가로 존재하는 순간부터 국제적인 원칙들을 갖었으며, 국가로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할 것이다. 멕시코가 원칙을 부정하는 날은 멕시코
 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 일 것이다. 멕시코는 원칙들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⁸⁾

4. 불간섭 원칙과 형성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에서 「간섭」(intervención)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국내
 외적인 문제에 간여하는 모든 행위와 타국의 행위를 강제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정
 의되고 있다. 따라서 「불간섭원칙」과 「주민자결원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외국의 수많은 간섭을 받았다.⁹⁾ 다시 말
 해, 강대국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중남미국가들은 국가생존의 위기 등을 포함하여
 국가적 위기를 수없이 당해야 했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초 독립을
 쟁취하고부터 중남미국가들은 외국의 간섭에 대항하여야만 하였다. 한편으로는 구

7) Manuel Tello, *La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 1970~1974* (México, D.F.: Fondo de Cultura y Económica, 1975), p.18.

8)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y Presupuesto, *El ejecutivo ante el Congreso 1976~1982* (México, D.F.: SPP, 1982), p.450.

9) 독립후 1910년 혁명까지 멕시코가 겪은 주요한 외국의 간섭을 보면, 1829년 7월 스페인의 Barradas 장군에 의한 멕시코 재정복 기도가 있었고, 1838년에는 불란서군의 침입이 있었다. 미국은 텍사스를 멕시코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적절 개입하였으며, 독립후 이를 즉각 합병하였다. 이로 인한 양국간의 전쟁은 1848년 Guadalupe Hidalgo 조약의 체결로 끝났으며, 동 조약에 의해 멕시코는 미국에 영토의 반을 넘겨 주었다. 현재 미국의 Texas, California, Arizona, Nevada, New Mexico, Colorado주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1862년에는 불란서가 침입해 Maximiliano 제국을 수립했으며 멕시코 혁명 동안 미국은 베라크루스를 무력 침공하였고, 멕시코주계 미국대사인 윌슨은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반혁명군을 지원하는 등 수많은 개입을 하였다. 1877년부터 1910년까지 Porfirio Díaz 대통령의 독재통치기간동안 외국의 많은 경제적인 간섭은 “멕시코는 외국인 어머니이고, 멕시코인의 계모이다.”라고까지 말하여 졌다.

식민지를 되찾으려는 스페인과 불란서, 영국, 홀란드 등 구라파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오 그란테(Río Grande) 이남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합중국이 있었다.

1823년 12월 2일 미국의 James Monroe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미국이 구라파대륙의 문제에 간섭치 않을 것을 선언하고 반대로 구라파 국가들도 신대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을 천명하였다. 신대륙에 구라파 열강의 간섭을 급한 미국의 선언은 바꾸어 말하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이 제약받지 않고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다. 미국은 먼로 독트린에 의해 이 지역에서 임의대로 「만행」 또는 「경찰관」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¹⁰⁾ Hans J. Morgenthau 교수는 먼로 독트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이는 서반구에서 구라파 국가들의 영토 획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이 행동의 자유를 갖게 하였으며 현대에 있어 가장 큰 영향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¹¹⁾

이와 같은 먼로 독트린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은 항상 동일한 것으로 미국의 자의적인 정치적 개입을 인정하는 먼로독트린을 국제적인 협약으로 인정치 않는 것이었다. 1962년 10월 미국 방문시 López Mateos 대통령은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먼로 독트린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의일 뿐이다. 멕시코는 이 주의를 국제 협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결코 없다.”¹²⁾라고 천명하여 이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독립을 쟁취한 후, 멕시코는 수많은 외국, 특히 미국의 직접, 간접의 내정간섭을 받아왔다. 이같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멕시코는 「불간섭원칙」을 자국 대외정책의 초석으로 하고 또한 국제정치에서 「불간섭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존중되도록 다각적이고 수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불간섭원칙과 관

10) 이후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수많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개입, 즉 간섭주의 정책을 수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들이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까지 존재했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완벽한 것’이라는 믿음과 이를 다른 나라에 전파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로서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믿음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파나마에 개입하면서 자신을 ‘등치기배’를 감옥에 집어넣는 경찰에 비유하였다. 또한 Coolidge 대통령은 니카라과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우리는 니카라과에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거리를 지키는 경찰관이 행인에게 싸움을 걸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Richard J. Barnett, 「미국의 대외정책과 제 3세계」 홍성후 역(서울 : 형성사, 1972), 100-114쪽.

11) Hans J. Morgenthau, *Historical Justice and the Cold War* (New York: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1969), p.13.

12) *Presencia internacional de Adolfo López Mateos*(México, D.F.: La Justicia, 1963), p.276.

런되어 멕시코 대외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의」(Doctrinas)로 Calvo 주의, Carranza주의, Estrada주의 등을 들 수 있다.

1) Calvo 주의

자국민 보호라는 구실하에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의 내정에 빈번히 간섭하였고 이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이같은 대응의 법적인 측면이 Calvo 주의이다. Calvo 주의는 국가 주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1868년 아르헨티나의 법학자인 Carlos Calvo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이는 계약상의 문제로 논쟁이 있을 경우 '외국인은 주재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본국에 외교적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멕시코 혁명시 혁명정부는 국내사정을 이유로 공채의 지불을 금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구라파 국가들의 기업들은—미국의 월 스트리트(Wall Street)의 금융가를 통하여 멕시코에 진출했던 기업들—「Drago 원칙」을¹³⁾ 무시하고 멕시코정부가 돈을 지불하도록 미국정부의 개입을 부추기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같은 서구 열강들의 태도를 멕시코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간주한 멕시코와 이들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또한 멕시코 내 자국민의 신변과 재산 보호라는 미명하에 구라파 열강과 미국은 혁명기간 동안 멕시코 내정에 빈번히 개입하였다. 이같은 미국의 간섭으로 인하여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진 멕시코는 1917년 혁명이 끝나자 Calvo 주의의 원칙을 멕시코 헌법 제27조에 명시하고, 「외국인 투자법」, 「국가조적법」, 「광산법」 등 타 법률에도 삽입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근본적으로 금하게 하였다.

2) Carranza 주의

미국 윌슨 행정부는 멕시코 혁명 동안 직·간접의 수많은 간섭을 하였다. 특히 Henry Lane Wilson 주 멕시코 미국대사는 Francisco Madero가 이끄는 혁명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활동하였다. 1914년 미 해병대의 베라크루

13) Drago 주의를 외채상환을 요구하며 행한 무력적 군사개입에 반대한 것으로 1902년 12월 29일 베네수엘라 외상 Luis María Drago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함을 봉쇄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한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 대항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국권과 국토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채무상환의 시기는 채무국 자신이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채무 당사국이 재정 상황을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제적인 신용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의 변제를 위해 힘쓸 것이기 때문이다. Drago 주의를 1902년 멕시코에서 열린 미주회의에서 그 원칙의 일부가 '재산 손해 청구 협정'에 삽입되었고, 1905년 멕시코는 이 협정을 비준하였다.

스항 침공, 1916년 Pershing 장군의 멕시코 원정 등은 혁명기간 동안에 자행된 미국의 대표적 무력 개입 사례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간섭은 혁명이 끝난 후 Venustiano Carranza 대통령이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가주권」과 「불간섭원칙」을 강조하는 정책을 취하게 하였다. 1917년 헌법을 공포하고 곧바로 Carranza 대통령은 1918년 국민의회 보고에서 혁명정부 대외정책의 몇 가지 원칙을 발표하고 이들이 국제적 원칙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Carranza 독트린」으로 명명된 원칙들은 이후 멕시코 대외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19세기 이래로 계속된 외침과 내정간섭의 피해자로서의 역사 속에서 내정불간섭이 국민적 원망이 되었고, 특히 혁명기간 동안 미국의 간섭은 혁명정부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Carranza 독트린」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

첫째, 모든 국가는 평등하며, 각국의 법과 국권 그리고 제도는 상호간에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어떤 나라라도 타국의 국내 문제에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간섭해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는 불간섭의 국제적 원칙을 예외없이 지켜야 한다.

셋째, 어떤 개인이라도 타국에서 특권이나 특별 조치를 받으며 주재국 인민보다 월등한 위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¹⁴⁾

3) Estrada 주의

일반적으로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의 국내정치 불안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수단 사용의 결과로 보았다. 미국은 중남미에서 자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왔다. 「정부승인 정책」은 미국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중요 정책 중의 하나로 명백한 내정간섭인 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정부승인 정책」은 특히 카리브지역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부의 생존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정부승인」은 미국이 원치 않는 타국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정부 승인의 댓가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특혜를 보장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¹⁵⁾

14) Guillermo Garcés Contreras, *México: Cincuenta años de política internacional* (México, D.F.: ICAP, PRI, 1982) pp.42-44.

15) 1933년 쿠바의 Gran San Martín 정부가 첫번째 예이며, 멕시코의 Alvaro Obregón 정부가 두번째의 대표적인 예이다. Gordon Connell-Smith, *Los Estados Unidos y la América Latina*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77), p.45.

혁명후 탄생된 멕시코 혁명정부는 미국과 일부 서구열강들에 의해 멕시코의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다시 말해, 멕시코는 1923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 5차 범미주회의(V Conferencia Panamericana)」에도 초청받지 못하였고, 「국제연맹」에도 1932년에 가서야 가입할 수 있었다. 멕시코 혁명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1923년 「Bucareli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는 미국이 Alvaro Obregón 혁명정부를 인정해 주는 댓가로 1917년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석유와 농업에 관한 국유화 규정을 미국 국적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Alvaro Obregón 혁명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 미국에 경제적인 특혜를 보장해 줌으로써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이같은 쓰라린 역사를 통해 멕시코는 정부 승인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따라서 1930년 9월 27일 Genaro Estrada 멕시코 외무장관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승인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멕시코는 정부승인을 발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멕시코는 정부 승인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한 국가의 내정이 다른 나라 정부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타국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사절을 유지하거나 철수시키며, 또한 멕시코 내 타국의 외교사절의 주제를 허용하지만 외국정부가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것에 대한 자격을 평가하지 않는다.”¹⁶⁾

Estrada 독트린에서 멕시코가 의도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즉, 정부 승인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 타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Estrada 독트린이 자동적인 정부 승인이나, ‘사실상의 정부’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멕시코는 오직 타국 정부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이다.

이후 멕시코 혁명정부들은 Estrada 독트린에 의거하여 대외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59년 쿠바의 카스트로 혁명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잘 나타났다. 1959년 1월 5일 멕시코는 새로운 쿠바정부에 대해 승인이나 불승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쿠바정부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였다.¹⁷⁾

16) Modesto Seara Vázquez, “La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 un mensaje vigoroso y de vanguardia,” *Pensamiento político*, No. 30, Vol. 8 (Oct. 1971), pp.167-192.

17) Estrada 독트린에 의해 멕시코는 새로운 쿠바정부에 대하여 정부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외교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중남미국가들 중에서

또한 1973년 9월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피노체트 군사정부에 대해서도 멕시코는 Estrada 독트린에 의거하여 정부승인이나 불승인에 대하여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약 800명에 달하는 정치망명자들을 받아들였다.¹⁸⁾ 약 1년 후 1974년 11월 26일 멕시코는 대사관을 폐쇄함으로써 피노체트 정부와 국교를 단절하였다.

5. 미주기구와 불간섭원칙의 적용

「불간섭원칙」을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 정한 멕시코는 Calvo주의의 내용을 1917년 멕시코 헌법 제27조에 규정하였으며, 타국 내정에 불간섭을 표명한 Carranza주의, Estrada주의 등을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수용하였다.

「불간섭원칙」은 1918년 혁명정부의 Carranza 대통령에 의해 멕시코 대외정책의 초석으로 발표되었으며, 멕시코는 초기의 「범미주회의」(Conferencias Panamericanas) 때부터 「불간섭원칙」의 적용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펼쳤고 이 원칙의 수호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였다.¹⁹⁾ 그러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불간섭 원칙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에 비취볼 때 미국의 불간섭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주기구 내에서 멕시코의 역할에 관하여 Connel-Smit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수차레에 걸친 미국의 간섭을 경험한 멕시코는 미주기구 내에서 미국의 권력 남용, 즉 독단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은 불간섭원칙의 엄격한 법적 적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멕시코 법학자들은 미주기구 내에서 불간섭원칙의 형성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1933년 「몬테비데오 범미주회의」와 1936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범미주회의」에서 불간섭원칙이 「불간섭 의정서」(Protócolo de no intervención) 로써 미주국가들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본 법규로 받아들여 졌고 이는 「미주

최초로 카스트로 정부를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Olga Pellicer de Brody, *México y la Revolución cubana*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72), pp.16-25. 를 참조할 것.

18) Guillermo Garces Contreras, *op. cit.*, pp.184-186.

19) 1933년 Montevideo 범미주회의에서 멕시코 외무장관인 Puig Casauranc 박사는 서반구에서 「불간섭원칙」의 법적 적용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변자였다. 이에 대한 반대자는 당시 미국대표였던 Cordel Hull이었다. Olga Pellicer de Brody, *México y la Revolución cubana*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72) p.31.

20) Gordon Connell-Smith, *El sistema Interamericano*, trad. Nelly Wolf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2), p.32.

기구」헌장 제15조에 상세히 명문화되었다.²¹⁾ 이 규정은 무력 개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위협을 주거나 개입하는 모든 형태의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Jorge Castañeda는 이같은 멕시코의 외교적 노력과 「불간섭원칙」의 서반구에서의 적용에 대하여 ‘범미주회의의 가장 큰 업적’이며, ‘서반구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원칙들도 「불간섭원칙」보다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²²⁾

1948년 제 9차 보고타 미주회의에서 전체 중남미 국가들의 찬성으로 —미국은 기권하였다— ‘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 선언’을 미주기구 헌장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중남미 국가들은 1933년 몬테비데오 미주회의에서 채택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하고 강화시켰다. 즉, 「불간섭원칙」을 미주국가들 사이에 중요한 국제법으로 선언한 것이다.

멕시코는 미주기구 이외에도 국제연맹 또는 국제연합 등 세계정치기구에서도 불간섭원칙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멕시코가 1932년 국제연맹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질 때 —멕시코 혁명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반대 때문에 멕시코는 1932년까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 간섭주의를 반대하였으며 먼로주의를 배척하고 이를 인정한 국제연맹 헌장 제21조를 유보하였다.²³⁾

멕시코는 불간섭원칙과 주민 자결원칙을 자국 외교정책의 초석으로 간주하고 이의 수호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불간섭원칙의 수호는 이 원칙의 국제적 적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을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결과와 행동에 대한 반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1954년 3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10차 미주회의에서 멕시코는 국제 공산주의의 신대륙내 가상 침투에 대비하여 미주국가의 정치적 동질성을 보호하고 공산주의 개입시 미주국가들의 집단행동과 간섭을 정당화하는 의안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불간섭원칙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회의에서 멕시코의 태도는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구실로 불간섭원칙이 유린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멕시코는 회의 개막전에 인권과 불간섭원칙을 총회의 주요 의제로 제안하였고, 본회의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항한 정책으로 인해 불간섭원칙이 유린되어서는 안된다

21) 미주 헌장 제15조 : 어떤 국가나 국가들도 타국의 국내외문제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 간섭을 할 권리가 없다. 불간섭원칙은 무력적 간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간섭을 포함한다.

22) Jorge Castañeda, *México y el orden internacional*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56), p. 179.

23) Modesto Seara Vázquez, *La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 La práctica de México en el Derecho Internacional* (México, D.F.: Editorial Esfinge, 1969), p. 69.

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멕시코는 서반구에 타대륙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반대하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주국가가 단독 또는 집단으로 특정 국가에 간섭하는 것도 반대하였다.²⁴⁾ 이와 같이 멕시코는 미국 또는 미국을 포함한 집단적 개입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미주기구」 헌장이나 「리오협약」(Tratado del Río) 조항들의 법적 해석을 엄격히 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우려는 수년 후 현실로 나타났다. 1961년 쿠바의 태지만(Bahía de Cochino)에 미군의 지원을 받은 쿠바 반군이 침공하였으며, 또한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에 미국 해병대가 상륙하였다. 이같은 미국의 무력 침공 이유는 신대륙 내 공산주의의 침투를 예방한다는 것이었다.

한 기자회견에서 López Mateos 대통령은 쿠바 혁명정부가 진정으로 쿠바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불간섭원칙의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

“의견을 피력하고 싶지 않은 쿠바의 국내 문제이다. 만일 내가 이에 대해 언급한다면 이는 한 국가의 국내 문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멕시코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원칙인 불간섭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²⁵⁾

멕시코는 쿠바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간섭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카스트로 정부가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게 혁명을 수출하려 했을 때, 멕시코정부가 취한 단호한 태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67년 쿠바의 카스트로 혁명정부가 중남미에 혁명 투쟁을 조장하고 후원하기 위해 「중남미 결속 기구」(OLAS, Organización Latinoamericana de Solidaridad)를 결성하자, 멕시코 정부는 「불간섭원칙」의 위배를 들어 “어떤 형태이든지 또 어느 곳에서 오든지 멕시코는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²⁶⁾ 또한 이같은 OLAS의 결의에 대하여 멕시코의 Antonio Carrillos Flores 외무장관은 1967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2차 「미주 외무장관회의」에서 멕시코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쿠바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정부를 선택하기 위한 「불간섭원칙」과 「주민자결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인정치 않고 멕시코 국내문제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의 국방이 조언하

24) Guillermo Garces Contreras, *op. cit.*, pp.127-128.

25) Secretaría de Gobernación, *Presencia internacional de Adolfo López Mateos* (México, D.F.: La Justicia, 1963), p.299.

26) Mario Ojeda Gomez, “Las relaciones de México con el régimen revolucionario cubano,” en Mario Ojeda Gomez et. al., *México y América Latina: La nueva política exterior*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74), p.59.

는 데 따라 적절한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²⁷⁾

제 6차 미주외상회의에서 멕시코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멕시코는 제재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즉, 멕시코의 개입은 도미니카 정부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이유 때문이지 도미니카정부가 독재이기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만일 독재정부이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면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⁸⁾ 이와 같이 멕시코는 국제정치, 특히 서반구내의 관계에 있어 불간섭원칙의 적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미국의 빈번한 개입으로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멕시코는 「미주기구」에서 「불간섭원칙」의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미국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에 제동을 가하려고 하였다.

이같은 멕시코의 태도는 80년대에 들어서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1981년 4월 1일 제 5차 정부 보고서에서 López Portillo 대통령은 멕시코 대외정책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불간섭원칙」을 강조하고 중남미, 특히 중앙아메리카에서 이의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멕시코는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원칙들을 수호하고 전개하여 왔다… 특히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서 불간섭원칙을 드높이 강조하여, 수차에 걸쳐 사적 또는 공적으로,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지역에서의 외부 간섭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²⁹⁾

1985년 4월 한 연설에서 De la Madrid 대통령은 “중미에서의 외부 간섭은, 간섭이 어느 곳에서 오든지 멕시코는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³⁰⁾라고 천명함으로써 「불간섭원칙」에 대한 멕시코의 명백하고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6. 맺는 글

멕시코는 역사를 통하여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외교정책을 펴왔다. 70년대 초까지도 멕시코의 대외정책은 소극적이고 법률의 해석을 중시하는 법률주의, 수동적 태도, 그리고 고립주의의 경향까지 보였다. 대외정책은 불간섭, 주민자결, 분쟁의 평

27)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2차 미주 외무장관회의에서 Antonio Carrillos Flores 멕시코 외무장관은 쿠바의 중남미에서의 혁명고양 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8) Peggy Fenn, “México: La no intervención y la autodeterminación en el caso de Cuba,” *Foro Internacional*, Vol. IV. julio-septiembre, 1963, pp.1-19.

29)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y Presupuesto, *op. cit.*, p.185.

30) El Día (México, D.F.), Jueves, 1985년 4월 18일.

화적 해결 등 전통적인 원칙들을 수호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데만 주력하였다.

이같은 멕시코의 소극적 외교정책의 주요 원인은 멕시코가 겪은 역사적 경험의 결과일 것이다. 멕시코는 독립국으로서의 존립까지도 위협받는 누란의 위기를 포함해 수차례의 어렵고 심각한 위기를 당하였다. 독립 후, 곧바로 구식민지를 되찾으려는 스페인의 재침을 방지해야 하였고, 이 위기를 무난히 극복하자, 멕시코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영토의 반을 상실하였다. 또한 수년 후에는 불란서가 Maximiliano 피뢰정부를 수립하여 통치하였다. 그리고 1910~17년의 멕시코 혁명 동안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은 군사,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면에서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멕시코에 개입하였다.

따라서 혁명이 끝나자, 멕시코는 국가 주권이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다. 즉, ‘불간섭’은 ‘국가 주권’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멕시코는 외국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와의 접촉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외국과의 접촉은 모든 ‘악’의 출발이었을 뿐이었다. 또한 외부의 멕시코내 개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따라서 혁명이후 지금까지 멕시코의 모든 정부들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불간섭원칙」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서반구에 있어서 이 원칙이 명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관계, 특히 미주 대륙의 관계에 있어서 멕시코는 계속적으로 「불간섭원칙」을 표명하여 왔다. 「미주기구」내에서 멕시코는 이같은 원칙들이 적용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이 기구가 전 세계의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만의 모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수많은 무력개입에 의한 쓰라린 경험을 체험한 멕시코는 또 다른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혁명의 소용돌이여 빠져나온 멕시코 정부는 1933년 몬테비데오 미주회의와 1936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제 7차 미주 회의에서 「불간섭원칙」이 미주기구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멕시코는 미주기구내에서 「불간섭원칙」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1948년 5월 제 9차 미주회의에서 「보고타 협정」을 체결할 때 멕시코는 미주기구의 원칙들을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거나 훼손시키는 어떠한 기도에도 반대하였다. 이같은 멕시코의 태도는 1959년 쿠바 혁명정부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아바나 정부에 대한 멕시코의 태도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자결원칙」과 「불간섭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당한 멕시코로서 이 원칙들이 갖는 의미가 보

다 강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권리주장으로 멕시코 외교의 기본원리로 지켜져 왔으며, 단기적으로는 멕시코의 국가이익에 불리할 경우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안전과 민족자립의 보증이라는 국가의 지상과제에 합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멕시코에 대한 미국측의 예측과 이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고 결국은 멕시코의 대외교섭 능력을 높여주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1959년 이후 멕시코의 쿠바 혁명정부에 대한 태도와 1979년의 산디니스타정부에 대한 대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La política exterior de los gobiernos revolucionarios de México

Song, Gui-Do

En materia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México ha sostenido a través de su historia reciente una actitud defensiva y pasiva. Hasta principios de los años setenta, su política exterior se caracterizó por un marcado legalismo, un notable abstencionismo, la pasividad, la falta de compromiso real y hasta el aislacionismo. Por entonces, su principal objetivo era la defensa y el mantenimiento de los principios jurídico y político de la no intervención, la autodeterminación de los pueblos, soberanía sobre recursos naturales, la solución pacífica de las controversias, desarme general, etc.

La experiencia histórica que México ha tenido es quizá la causa principal de la actitud de pasividad de su política exterior. México, a lo largo de su historia, ha sufrido diferentes y graves crisis que han puesto en peligro su existencia misma como país independiente. Esto es así porque después de la independencia México debió preocuparse de su existencia como país soberano puesto que España con el apoyo de los países que constituían la Santa Alianza, intentaba recuperar su antigua colonia. Al superarse esta crisis, a México le sobrevino luego el expansionismo norteamericano, por virtud del cual México perdió casi la mitad de su territorio original. En los siguientes Francia intervino imponiendo a Maximiliano como emperador del país. Luego, durante la Revolución, Estados Unidos intervino abiertamente utilizando todos los medios políticos, económicos, diplomáticos y militares.

Por eso, al terminar la Revolución, México consideró que la conservación de la soberanía era no tener que verse sometido a la intervención de los países extranjeros. La no-intervención fue sinónimo de soberanía. Así, la experiencia histórica le enseñó que la única manera de evitar aquellas intervenciones era no tener muchas relaciones con otros países dado que el exterior significó sólo una fuente de 'males'.

De esta manera podemos decir que la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 está basada

en ciertos principios derivados de su experiencia histórica y que se han manifestado en alto por los sucesivos gobiernos revolucionarios hasta hoy, sobre todo, el principio de la no-intervención. Este principio con el de la autodeterminación se ha manifestado ininterrumpidamente en la política internacional, especialmente en el ámbito interamericano. México, desde su independencia, ha luchado por hacer valer este derecho de autodeterminación y la no-intervención, habiendo sufrido muchas violaciones a ellos, razón por la cual ha aumentado la significación otorgada por el mismo.

El principio de la no-intervención trae como consecuencia la adhesión de México a la Doctrina Calvo, cuyos contenidos están incluidos en la Constitución mexicana de 1917, a la Doctrina Carranza y a la Estrada. El principio de no intervención que emana de la Doctrina Carranza de 1918, se adoptó en la Conferencia Panamericana de Montevideo en 1933 y finalmente de Buenos Aires en 1936. Y en la IX Conferencia de Bogotá celebrada en 1948 pudo incluirse en la Carta de la OEA el principio de la no-intervención, que es la 'Declaración de Derechos y Deberes Fundamentales de los Estados', por el voto unánime d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México ha defendido los principios de la no-intervención y de la autodeterminación como piedra angular de su política internacional a lo largo de su historia, sobre todo, después de la Revolución. La defensa que ha asumido del principio de la no-intervención ha supuesto no sólo lograr su aceptación internacional sino también el rechazo a cualquier resolución que en una u otra forma pudiera dar bases para su violación.